

	job-ara센터운영규정	규정번호	5-0-75
		제정일자	2023. 9. 1
		개정일자	2026. 7. 1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민대학교 job-ara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조직구성 및 업무

제2조(구성) ① 본 센터는 입학취업처에 두며, 센터 명칭은 “job-ara센터” 로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센터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.

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job-ara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

제3조(업무) ①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job-ara센터 운영계획 수립
2. 학생의 취·창업 활동 및 지원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
3. 취·창업 교육프로그램의 운영·확대 등 연계 업무에 관한 사항
4. job-ara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
5. 취·창업 유관기관 협업과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업무
6. 기타 취·창업 관련 업무 협업 제반 사항

제 4 장 센터 위원회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해 job-ara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내외로 하고,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위원장이 모집·선발하여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

제5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모니터링, 센터 추진현황 및 운영성과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취업지원 다면평가위원회에서 job-ara센터의 자체평가업무를 대신한다.

제6조(임기) 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단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임기는 조정될 수 있다.

②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. ③ 결원으로 인한 보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7조(회의 소집)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5 장 재정 및 기타

제8조(재정) 센터의 운영에 관련되는 재정은 본 대학교 교비 및 정부기관의 국고보조금, 지자체의 사업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9조(회계) 회계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회계 규정에 따른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job-ara센터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